

#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 안내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국립농산물검사소경기지소 성남·하남·이천·광주출장소

[우)464-800 /주소 광주군·읍 경안3리 74-9/전화 (0347) 766-6060 /전송(0347)765-9337  
출장소장 : 배병식 담당자 : 조광희

문서번호 광주 51160-1342

시행일자 1999. 6. 25.

받 음 두채협회장  
참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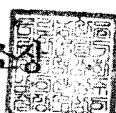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1999. 6. 25. 15:00	결 재	
	번호			
	처 리 과		공 람	
	담 당 자	조 인성		

## 제 목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 안내

- 관련 : 환경농업육성법 제 17조
-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유통·수송업자는 환경농업육성법 제 17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므로
-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에 대한 안내를 별첨파일과같이 송부하오니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 안내서 1부 끝.

국립농산물검사소경기지소 성남·하남·이천·광주출장소  
“너와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주) 국립농수산물 검사소가 99년 7월 1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경영정보

### 1. 환경농산물 및 그 종류에 대한 정의?

#### ① 환경농산물이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농축림산물(농산물)을 말한다.

#### ② 환경농산물의 종류에 대한 정의

##### ◦ 유기재배 농산물

윤작의 도입, 퇴비와 녹비의 투입 등 적절한 토양 관리 하에서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법(이하 “유기농법:이라 한다)을 3년 이상 실시한 포장에서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로서 생산물의 농약잔류는 보건복지부 고시 허용기준치의 1/10아하이어야 한다.

##### ◦ 전환기 유기재배 농산물

“유기농법”으로 전환한 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인 재배포장에서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로서 생산물의 농약잔류는 유기농산물과 같다.

유기재배의 정착은 상당한 기간의 전환기를 요구 한다. 이 기간은 생산자에게는 생산물이 생산되어지는 환경에 적합한 재배기술을 단련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다. 한편, 생산을 유지시키는 체계 즉, 토양 등에 있어서 잔존하고있을지 모르는 농화학적 잔류물질(태양과 퇴비 등에 있을지 모르는)의 소멸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 기간에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기준과 생산물에 대한 유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환기유기농산물은 일반적으로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정제, 제초제),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를 활용하는 농법으로 전환한지 3년 미만인 포장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유기농산물과 같다.

##### ◦ 무농약재배 농산물

윤작의 도입, 퇴비와 녹비의 투입 등으로 토양을 관리하며,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화학비료는 농업기술센타소장의 추천 시비량

을 준수하는 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로서 생산물의 농약잔류는 유기농산물과 같다.

##### ◦ 저농약재배 농산물

재배 중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농약관리법 제 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안전사용기준의 1/2아하이어야 하며, 품모결 첫 수확일로부터 30일이전 까지만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로서 생산물의 농약잔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치의 1/2아하이어야 한다. 저농약재배 농산물은 과실류 및 과채류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환경농산물 표시 신고 안내

#### 1. 신고서의 제출

(1) 신고대상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용기등에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이라는 표시를 도형 또는 문자 등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자로 한다.

(2) 신고자는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배포장(사업장)을 관찰하는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표시하고자 하는 환경농산물의 종류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신고 시 주의사항

##### (1) 환경농산물의 표시종류별로 신고

(가) 재배포장이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신고서에 필지별로 재배품목과 재배면적을 첨부

(나) 표시하고자 하는 환경농산물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표시하고자 하는 환경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재배포장별 재배품목과 재배면적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다.(필지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한다)

(2)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농산물의 표시를 신고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농업민간단체의장이 발급하는 재배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배경력증명서는 재배포장별로 재배경력을 표시하여야 한다.

(앞쪽)

처리기간  
7일

## 환경농산물표시사용신고서

신고인	① 법인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신고내용	⑤ 사용할 표시		
	⑥ 품목		
	⑦ 재배면적	m <sup>2</sup>	
	⑧ 생산(계획)량	톤	
	⑨ 생산기간	-	
	⑩ 출하기간	-	
	⑪ 포장소재지		
생산방법	⑫ 토양관리방법		
	⑬ 비료사용방법 (1,000m <sup>2</sup> 당)		
	⑭ 농약사용방법 (1,000m <sup>2</sup> 당)		

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농산물의 표시사용을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검사소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농촌지도소장 또는 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재배경력확인서(유기농산물 ·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표시도형(표시도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7271-28811

민1998. 8. 31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뒷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신고인의 성명을 씁니다.
3. ⑤ 사용할 표시란에는 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 2의 표시방법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쓰고, 표시도형을 사용할 경우는 “도형사용함”으로 씁니다.
4. ⑬ · ⑭ 비료 및 농약 사용방법란에는 사용하는 비료(유기질비료 포함) 및 농약의 명칭과 함께 사용량, 사용시기 등을 씁니다.

## 환경농산물 표시 신고 안내

### 1.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서의 제출

- (1) 신고대상자는 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 · 용기 등에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지농약농산물이라는 표시를 도형 또는 문자 등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자로 한다.
- (2) 신고자는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필요한 설를 첨부하여 재배포장(사업장)을 관찰하는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표시하고자 하는 환경농산물의 종류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신고시 주의사항

#### (1) 환경농산물의 표시종류별로 신고

- (가) 재배포장이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신고서에 필지별로 재배품목과 재배면적 첨부
- (나) 표시하고자 하는 환경농산물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표시하고자 하는 환경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재배포장별 재배품목과 재배면적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다.(필지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한다)
- (2)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농산물의 표시를 신고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농업민간단체의장이 발급하는 재배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재배경력증명서는 재배포장별로 재배경력을 표시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 안내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유통·수송업자는 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 친환경농산물 종류

- 유기농산물(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으로 3년이상 재배)
- 전환기유기농산물(유기농법으로 1년이상 재배)
- 무농약농산물(유기합성농약:무사용, 화학비료:농업기술센터 권장시비량 준수)
- 저농약농산물(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사용, 화학비료:농업기술센터 권장시비량 준수)

## 신고대상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표시 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유통·수송업자

## 신고기한 및 유효기간

신고기한: 친환경농산물 표시 출하전 7일 까지 연중 신고

유효기간: 친환경농산물 종류 변경을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한 계속 유효

## 신고방법

- 친환경농산물 종류별로 『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서』를 관할 농검출장소에 제출  
※ 유기·전환기유기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자는 『포장별 재배경력 증명서』 첨부

## 표시방법

신고한 친환경농산물 종류, 신고번호, 생산자명, 전화번호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포장재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거나 현물에 풋말, 스티커 등으로 표시

## 신고자 준수사항

친환경농산물 생산 허용자재 및 품질기준 준수, 허위·과대광고 금지규정 준수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과대광고, 생산과정 및 시판품조사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 표시 정지 등 행정처분
  -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안내 : 국립농산물검사소경기지소

성남·하남·이천·광주출장소

전화 : 766-6060